

2026년 울산 기술강소기업 유치지원사업 모집공고

2026년 울산광역시 「울산 기술강소기업 허브화」에 의거, 지역 외 기술강소기업의 유치를 위해 「울산 기술강소기업 유치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04월 21일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R&D 지원을 통한 울산지역 기술강소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 **(지원규모)** 총 약 7억원(지방비 7억원)
 - 지원금 : 80백만원 이내/11개사
- **(지원기간)** 2026. 6. ~ 12. (7개월)

구분	지원 기업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지원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기술강소 유치R&D	11개사	7개월 이내	8천만원 이내	70% 이내	'26. 4월	4-5월	5-6월

* 지원기간, 지원금액 및 지원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지원기업 및 지원금액은 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 **(사업비 부담비율)** 기업별 민간부담 현금·현물 비율 적용

구분	지자체 지원금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3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참여)	총 사업비의 50% 이하	총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지역 외 중소기업 단독

- 주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세부 지원 대상	세부 지원내용
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울산지역 내로 사업장(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신설) 예정 기업 ※ 2026. 01.~12. 중 이전 또는 예정 기업 ※ 역내 이전 후 5년간 사업장 유지 의무이행	제안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따른 R&D 자금 지원

※ 울산 이전·창업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타 지역에 본사를 둔 경우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신설 가능

3. 의무이행사항

○ 공통 의무 이행사항

- 이행보증보험 가입(협약 체결시)

- (R&D과제 수행) 기술개발기간 및 결과평가기간(10개월)에 대한 증권
- (사업장 5년 유지) 협약일 기준 5년간 울산 사업장 유지에 대한 증권
- * 상기 2종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사본 제출
- * 사업비 내 보험료 및 수수료 계상 가능(보험가입금액의 경우 지원금의 110% 계상)

- 사업장 이전 및 역내 사업장 유지의무(5년)

- 2026년 12월까지 사업장 주소지 이전 완료 및 유지(협약일로부터 5년)
-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6년 중 울산지역에 사업장 보유
- * 사업신청 시 '사업장 이전 확약서', 결과보고 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중 해당서류 제출 의무
- 연 1회 사업장 유지 여부 서류 제출 및 실태조사 실시(협약일로부터 5년간)
- * 사업장 유지 기간(5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하며, (환수금액 = (지원금 * 유지 미이행 일수)/1,825~6일(5년)) 환수 시 이자는 울산광역시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 기술강소기업 확인 사항 중 선택 인정 의무화

- (기존 인증기업) 기술강소기업 인증 유효기간 유지 및 주소지 변경

- (신규 예정기업) 2026년 12월까지 기술강소기업 인증 획득
 - * 기술강소기업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중 1개 이상
 - * 결과보고 시 '기술강소기업 인증서' 제출 의무

○ **선택 의무 이행사항**

- 지원사업비의 울산 지역 내 집행·사용 권고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의 울산 지역 내 집행·사용 계획 수립
-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서의 지원사업비 집행·사용 시 사유서 제출

- 고용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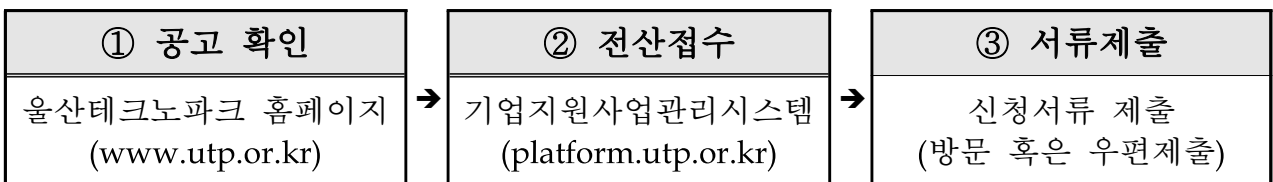
- R&D 과제수행과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 인력을 채용한 경우를 의미함
- (고용창출) = $\sum(\text{신규 연구개발인력} \times \text{기술기여도(참여율)}) + \sum(\text{신규 생산인력} \times \text{기술기여도}) + \sum(\text{신규 기타 인력} \times \text{기술기여도})$
- * 기술기여도 : 개발된 기술적용 제품 매출액에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출한 정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1%~100% 사이 값 산정)

- R&D 관련 매출(수출)액

- R&D과제 수행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발생된 제품(부품) 매출액 중 기술기여도를 반영하여 산출한 매출액 의미
- (R&D 관련 매출액) = $\sum(\text{제품별 개발 기술 적용 매출액} \times \text{기술기여도})$
- * 개발 기술 적용 매출액 : 개발 기술이 적용되어 생산·판매된 제품 전체의 매출액
- * 기술기여도 : 개발된 기술적용 제품 매출액에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출한 정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1%~100% 사이 값 산정)

4.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접수 전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전 진행 필수
 (가입 허가에 2~3일 이상 소진될 수 있어 시간적 여유 권고)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 1) 접수증 1부(온라인 전산접수증 출력·날인 후 제출)
- 2) 사업계획서 1부(출력·날인 후 제출)
- 3) 주관기업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4) 울산 기술강소기업 유치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기업재무상황 및 신용정보 확인용) 각 1부
- 5) 주관기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6) 주관기업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 (최근 2년간(24·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업력이 1년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참여연구원 재직 확인용)
- 8) 참여기관 학생연구원 재학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재학 확인용)
- 9) 사업장 이전 확약서, 기술강소기업 인증·인정 확약서 1부
- 10) 주관기업의 신용상태 조회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11) 유사과제 검색결과증 (<http://www.ntis.go.kr>, 기준유사도 60, 유사과제 요약정보 포함)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만 인정

○ 제출시 유의사항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 원본 1부는 우편 및 방문 제출, 사본 1부 e-mail 제출
- 전산 접수 시 홈페이지(platform.utp.or.kr) 가입 후 관리자 승인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최소 2~3일 전에 가입 필요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제출처

-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103호

6. 평가방법 및 기준

- **(공모방식)** 자유공모
- **(평가방법)** 예비진단 및 실태조사를 통한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 실시
 - 사전서류검토 : 과제 중복성, 지원자격 적정성 확인
 - 실태조사 : 기업현황 및 연구개발 역량 확인
 - 선정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적 평가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선정 및 지원금 규모 확정
-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지표(안)
기술성	기술개발 개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의 성과(최종산출물)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 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목표 및 추진내용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가? • 추진목표, 추진계획 및 내용은 적합하며 실현 가능한가?
사업성	사업화 계획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 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매출효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경영 능력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가 구성되어 있는가? •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사전준비 및 능력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능력이 우수한가?
	사업비 편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기여도	지역경제 기여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이전을 통한 지역 산업 및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우수한가?
	일자리창출 기여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을 통해 지역 내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한가?

7. 유의사항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제1항(비목별 계상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8.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6. 04. 21.(화) ~ 05. 13.(수)
- 접수기간 : (전산접수) 2026. 04. 27.(월) ~ 05. 13.(수) 16:00 까지
(서류제출) 2026. 04. 27.(월) ~ 05. 13.(수) 18:00 까지
- ※ 전산접수 전 사전가입 필요, 마감시간 이후 접수 및 제출 불가



9.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 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 제외될 수 있음
 -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10.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9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 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주관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주관기업) 소속 임직원에 대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주관기업)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주관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3.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주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주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주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

11. 관련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 지원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보조금 지원 지침
 -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지침
- ※ 사업별 관련 법령을 제시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 실시

12. 문의처

- 울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실 주예지 연구원 (052-219-0846, judee@utp.or.kr)